##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59

발의연월일: 2022. 4. 14.

발 의 자:정일영·김주영·최기상

이광재 • 김병기 • 송기헌

장철민 · 김진표 · 박성준

박찬대 • 윤관석 • 유동수

신동근 • 이해식 • 임오경

박홍근 · 송재호 · 허종식

김수흥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조직문화가 꼽히고 있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워킹맘', '워킹대디' 중 67%가 퇴사를 고려하는 사유로 '육아'를 꼽아 육아 부담이출산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 등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기업,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금전 적·사실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꺼리는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임.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회

사에 복직한 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할 경우 그가 근무하는 중 견·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8 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 중 62.1%, 여성 노동자 중 46.7%가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활성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 휴가 복귀자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15의 인건비를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인 경우 인건비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100분의 40, 100분의 25로 상향하여 노동자의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30"을 "40"으로, "15"를 "25"로 한다.

-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 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것
-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 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u> 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u>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
	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
	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
	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u>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u>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
	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
	<u>지 아니한다.</u>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

-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우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 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것
-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 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u>③</u>	
2025년	
<u> </u>	

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 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 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③ ~ <u>⑥</u> (생 략)

<u>40</u>
<u>25</u>
<u>.</u>
1. ~ 3. (현행과 같음)
$\underline{4}$ $\sim$ $\underline{7}$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